

#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 경,  
김경훈, 김규남, 김기덕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 
박춘선, 신동원, 유정인,  
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환,  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.
- 동 조례의 경우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정작 관람료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
- 이에 시지정 국가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지정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(안 제32조제2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2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13.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
1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2조의2(관람료의 감면) 시장은</u> 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 <u>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</u>  <u>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</u>  <u>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</u>  <u>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민 및 그 수행자</u></li> <li>2. <u>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</u></li> <li>3. <u>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</u> <u>자치구의 주민</u></li> <li>4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/u> <u>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67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li> <li>5.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</u> <u>법률</u>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 <u>람</u></li> <li>6.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</u> <u>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</li> <li>7. 「<u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</u> <u>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<u>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li> <li>8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</u></li> </ol>
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

조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

조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

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

당하는 사람
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

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

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
1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

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

는 보호자

13.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

이상의 노인

1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

는 사람

#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32조의2(관람료의 감면)	△	관람료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가 발생하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추계를 위한 통계가 부족하고, 감면액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동 개정안 제32조의2(관람료의 감면)에 따라 시지정유산 관람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, 서울시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) 확인결과 감면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<sup>1)</sup>를 가지고 있지 않고, 감면금액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 - 따라서 변수에 따라 세입감소 금액이 크게 달라져 본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를 준용한 자체 추계 또한 곤란함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    희    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관람료 감면 대상자별 관람빈도